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82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 : 민형배ㆍ이상식ㆍ김태년

김원이 • 이수진 • 이기헌

소병훈 • 박용갑 • 김현정

윤준병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.

이때 여신금융기관, 신용정보회사,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.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나옵니다.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.

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8 조의2).

법률 제 호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 는"을 "채권추심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의2(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	제8조의2(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		
에 대한 연락 금지) <u>다음 각</u>	에 대한 연락 금지) <u>채권추심</u>		
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	<u>자는</u>		
무자가 「변호사법」에 따른			
변호사·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			
한)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			
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			
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			
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			
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			
채무자에게 말·글·음향·영상 또			
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			
아니 된다. 다만, 채무자와 대			
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			
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			
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		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	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	<u><삭 제></u>		
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			
따른 여신금융기관			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	<u><삭 제></u>		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			
추심회사			

- 3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| <삭 제>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
- 4.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 | <삭 제> 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 권자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 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 권추심을 하는 자(다만, 채권 추심을 하는 자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 부업자, 대부중개업자, 대부업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 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)

<삭 제>